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발표문

IMT-2000의 성격 및 도입 의의

IMT-2000은 국내·외간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영상전화 등을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정보통신인프라로써 '이동성'과 '인터넷'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 중 사업자 선정을 추진중이며, 정보통신부는 '97년부터 IMT-2000 도입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99년부터 정부 등에서 수차례 걸친 공청회를 거쳐 금년 7월초순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금년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그간의 공청회등 의견수렴 결과

- 사업자수는 사업성, 경제성, 중복·과잉투자 면에서 신규와 기존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3개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업참여기회의 확대, 경제력 집중완화, 시너지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사업자 선정방식은 경매방식 보다는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하되 경매방식의 장점을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대부분 출연금 규모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이었으나, 통신사업자의 경우 출연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견이었음
- 기술표준은 업계 자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동기식(미국방식)과 비동기식(유럽방식)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었음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

-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증대 및 이용자의 형평성 확보
- 새로운 사업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
-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
-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과잉·중복투자를 최소화



-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연관효과를 극대화

가. 역무명

- 역무명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기술변화 및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역무명을 변경하기 위해 역무명을 통합하되,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하므로 이동통신(셀룰라), 이동통신(피씨에스), 이동통신(아이엠티이천)으로 정함

나. 사업자 수

- 사업자수는 충분히 경쟁을 촉진하면서 사업성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정하고, 중복 · 과잉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3개 사업자를 선정
 -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 차별없이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

<IMT-2000 사업전망>

□ 수요전망

- IMT-2000 수요는 2002년부터 기존 이동전화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2005년경 부터 본격적인 IMT-2000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사업성분석

-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의 누적손익분기점은 IMT-2000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이동전화사업자 수가 3개일 경우 2005~2006년, 4개~5개일 경우 2006~2007년으로 추정

<국내 연구기관 매출액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예측시기	서비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10
KISDI	2000.6	2세대	142,974	133,348	115,476	96,731	36,385
		3세대	3,283	17,977	42,242	65,939	140,678
ETRI	2000.6	2세대	156,230	145,100	120,630	81,500	867
		3세대	7,298	24,190	63,385	133,109	238,789

□ 투자비 규모

- 투자비규모는 1개사당 1조 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신규는 4천억원 추가소요), 신규사업자는 운용



인력확보, 유통망 구축 등 추가비용 발생

(※ 동기식·비동기식등 기술표준방식에 따른 투자비 규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다.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은 그 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
 - 소비자 후생증대 및 중복투자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 보호계획, 투자계획의 효율성 등을 평가
 - 중소 정보통신업체, 컨텐츠 업체 등의 사업참여기회 확대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주주구성의 적정성(주주구성의 안정성 및 분산정도)을 평가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
 - 출연금의 상한액(1.3조원)과 하한액(1조원)을 제시하고, 출연금 제시액이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따라 일정수준(예 : 2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매방식의 장점을 가미
 - (※ 신청법인의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같거나 적을 때에는 상 · 하한액의 평균액 이상을 제시토록 하고, 하한액 또는 평균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신청업체간 하한액으로 담합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
 - 출연금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
 - 분할납부의 경우 출연금의 1/2은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토록하고, 나머지 1/2은 2002년부터 10년간 분할납부(이자 포함)
 - (※ 2GHz 대역의 IMT-2000에 한하여 연도별 출연금을 부과하지 않음)
 - 출연금은 구성주주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자본이득의 일부를 회수하여 특혜서비스를 방지하고, 출연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

라. 기술 표준

- 기술표준은 복수표준을 채택하여 업계가 자율로 결정토록 함
 -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글로벌 로밍측면에서 IMT-2000 허가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

마.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산정

(1) 배경

- 정부가 공공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할 때 정부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여 공공부문으로 이전(경제적 지대의 회수)

(※ 정부가 경제적 지대를 징수하지 않거나 낮게 받는 경우 결과적으로 공공의 비용으로 특정인을 보조하게 됨)



- 주파수도 희소한 공공자원이며, 이를 위해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중요(자원배분의 효율성)

(2) 법적 근거

- 정통부장관은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하여 공고

※ 전파법 관련규정

- 제11조제1항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기를 출연금으로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
- 제11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출연금은 정보화촉진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3) 출연금의 용도

- 출연금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정보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기술개발 등 미래에 대한 투자로 활용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제2항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사업
2. 공공·지역·산업·생활·장애인을 포함한 정보화촉진사업
3.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4.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5.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4) 해외사례

국가	사업자수	면허기간	주파수 할당 대가	
			전체	사업자당 평균
영국 (경매제)	5	20년	39조원 (£225억)	7.8조원 (£45억)-일시불 또는 허가시 50% 납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납부(이자율 8.65%)
일본 (심사제)	3	-	주파수 할당대가 없음	
프랑스 (심사제)	4	15년	21조원 (\$188억)	5.2조원 (\$47억) - 2년내에 50%, 나머지는 13년동안 분할납부, 유효기간 종료후 출연금 재납부

※ 진입비용(Entry Fee) 산정근거

- 영국, 이태리등의 경매가격을 참조하고, 인구, 소득, 주파수 용량, 면허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



(5) 적정 출연금 수준 산정

- 주파수 이용기간은 사업자의 장기적인 계획수립, 외국 사례(15~20년) 등을 고려할 때 15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 출연금 산정방법
 - 우선, 15년간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의 3%를 적용한 결과 약 4조원(사업자당 약 1.34조원)으로 추정됨
 - * 종전의 경우 일시출연금은 5년간 예상매출액의 7%, 연도별출연금은 2000년까지는 3%, 2001년부터는 1%를 적용
 - 한편, 주파수자원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이용효율을 제고하려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확정된 외국 주파수대가(프랑스)를 GDP, 주파수 폭,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결과 약 3.92조원(사업자당 약 1.31조원)으로 나타남

⇒ 두 가지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를 절사한 금액인 사업자당 1.3조원을 출연금 상한액으로, 상한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1조원을 하한액으로 설정

비. 국민면의 증진 및 이용자 보호대책

- IMT-2000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소득 증진에 기여
- * 2002년~2010년 까지 : 고용창출효과 약 42만명~55만명 : 생산유발효과 약 38조원~48조원
- 사업초기부터 기지국 공용화 등을 추진하여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2~3세대간 로밍을 통해 전 국민이 사업자 선택에 관계없이 이동전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
- * 2~3세대간 로밍은 IMT-2000 신규사업자가 기존 2세대 사업자에게 2~3세대 로밍을 요청할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심사시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신규 부가서비스 제공계획을 평가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 등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평가하여 이용자 후생과 형평성 확보
- 사업자 선정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운영, 이용자 불만 처리절차 등 이용자 보호계획을 제출토록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제고

사. 증복·과잉 투자 쇠소와

(1) 기지국 공용화 추진

- 공용화 의무부과
- 전파법상『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권』을 통하여 공용화 의무부과
 - 공동사용 명령권 관련 판단기준·절차 등 규칙 및 고시를 정비하고, 각 체신청에 설치된『기지국 공용화



심의위원회』운용을 강화

-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사업자 선정 후 허가조건에 반영 추진

▣ 자율적 공용화 및 로밍 유도

- 전파사용료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적인 공용화를 추진
- 트래픽이 적은 국도·지방도 주변 지역의 기지국에 대하여 IMT-2000 사업자간 로밍 적극 유도

< 자율적 공용화 인센티브 제공 내용 >

- 기지국당 무선국검사수수료 20%(기지국당 평균 51.5만원) 감면
- 공용화 및 로밍 기지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공용화 및 로밍율(%)	10미만	10 ~ 20	20 ~ 30	30 ~ 40	40 ~ 50	50이상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4	0.06	0.08	0.10
로밍 감면계수	0.05	0.10	0.15	0.20	0.25	0.30

* 전파사용료 = (가입자수 × 단가) × (1 - 감면계수)

(2) 환경 친화적 안테나 보급

- 국·공립 공원지역, 도로변 기지국 등에 나무모양 등 환경 친화적 안테나 설치 권장
- 한국기지국관리(주)의 공용기지국에 우선 도입하고, 각 사업자에게 설치를 적극 권장

(3) 2~3세대간 로밍 의무화

- 기존 CDMA망을 보유하지 않은 IMT-2000 신규사업자가 기존 2세대 사업자에게 2~3세대 로밍을 요청할 경우 기존 2세대 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함
 - IMT-2000 사업자는 자체 판단에 따라
 - 사업 초기에 전국적인 3세대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2~3세대 로밍을 통해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사업 초기에 3세대 전국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안중 선택이 가능
 - 의무화 대상 사업자
 - IMT-2000 사업권을 획득한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사업자가 대주주인 법인
 - 의무화 적용기간
 - IMT-2000 전국망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2005년말까지



아. 추가주파수 및 TDD주파수 할당

(1) 추가주파수 할당 방안

- IMT-2000 추가 주파수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대역에서 주로 정하기 때문에
 - ① ITU의 세부계획 확정, ② 국내 주파수분배 변경 공고, ③ 기존시설의 이전 등 10년 이상의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 이번 사업자 선정시에는 추가주파수 관련 정책결정을 유보하고 추후 국·내외 여건 및 동향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ITU-R은 사용채널 등에 대해서 3년동안 추가 연구를 하기로 함
- ※ 외국의 경우도 IMT-2000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추가주파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TDD 주파수 할당방안

- TDD 주파수는 빌딩 근처의 고속 데이터 수요 충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 국내 관련 기술기반이 전무하고
 - 세계적으로도 장비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 2005년경 IMT-2000 추가 주파수가 활용될 수 있어 주파수 수급에 변동 요인이 있음
- 따라서, 이번 IMT-2000 사업 허가시에는 FDD 주파수만 할당하고 TDD 관련 정책결정을 유보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TDD 주파수 활용 추세, 관련 기술개발 현황 등 여건의 변화를 주시한 후 정책결정 추진

자. 심사기준 개선방향(초안)

(1) 배경

-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기준은
 - 소비자후생 증대 및 이용자 형평성 확보, 중복 과잉투자 최소화,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고,
 -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항목을 간소화, 객관화, 계량화하고, 심사절차의 단일화 추진

(2) 주요내용

- 유사성이 있는 세부심사항목들은 통합,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 항목 삭제, 심사절차를 단일화하는 등 심



사 기준 절차 간소화

•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용 및 표현을 구체화하고,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명시

-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계량평가 점수 상향조정
-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서비스제공·투자 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의 우수성, 이용자보호계획,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등을 신설·강화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관련업계,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7월말에 확정할 예정임

향후 계획

- 2000. 9월 하순 : 허가신청 접수
- 2000. 10월~11월 : 허가심사
- 2000. 12월 하순 : 사업자 선정

제3조(특례규정)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이하 “IMT-2000”이라 한다) 사업자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하나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 계열회사는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은 하나의 허가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에 한함)에만 참여할 수 있다.

2. 일시출연금은 허가신청법인이 납부하되 허가신청법인이 아닌 구성주주가 부담(분납하는 경우 분납액 포함)하여야 한다.

3. 허가대상법인은 일시출연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1/2을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자를 가산하여 분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납할 잔액의 전부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다. 분납의 경우 세부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대상법인에게 연도별출연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7. 26 사업자 허가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고시 中)